

인터넷 법제동향

Laws and Policy Trends of the Internet



CONTENTS

국내 입법 동향

<공포된 법령>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021. 4. 20.) 1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2021. 4. 20.) 2

<국회 제출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의원 대표발의, 2021. 4. 8. 제안) 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2021. 4. 13. 제안) 5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2021. 4. 8. 제안) 6
-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1. 4. 13. 제안) 7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의원 대표발의, 2021. 4. 27. 제안) ··· 9
- 「데이터 산업 진흥법」 제정안(이영의원 대표발의, 2021. 4. 13. 제안) 10
- 「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1. 4. 13. 제안) 1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2021. 4. 19. 제안) 13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의원 대표발의, 2021. 4. 20. 제안) 14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2021. 4. 20. 제안) 15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2021. 4. 6. 제안) 17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2021. 4. 23. 제안) 18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대표발의, 2021. 4. 6. 제안) 1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4. 13. 제안) 20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1. 4. 13. 제안) 21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2021. 4. 30. 제안) 22
-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2021. 4. 23. 제안) 24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2021. 4. 13. 제안) 25

해외 입법 동향

<미국>

- 미국 매사추세츠주 하원, 디지털 광고 서비스 관련 3개 법안 검토 착수 (2021. 3. 29.) 26
- 미국 연방대법원, Facebook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1991년 전화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 (2021. 4. 1.) ··· 29
- 미국 텍사스 주 상원,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정치 성향 표현에 대한 검열 금지 법안 통과 (2021. 4. 1.) 33
- 미국 상원, 연방정부 기기에서 특정 소셜미디어 앱의 사용금지 법안 재발의 및 통과 (2021. 4. 15.) 36
- 미국 연방 상원, 빅테크 단속 법안 발의 (2021. 4. 19.) 39

<영국>

- 영국 정부, 거대 플랫폼 사업자 견제 위해 디지털시장국 설치 (2021. 4. 7.) 42

CONTENTS

해외 단신

<영국>

-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커넥티드 소비자 사이버보안 의무화 입법 착수재발의 (2021. 4. 26.) 45

<싱가포르>

- 싱가포르 정부, 전자 양도성 기록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전자거래법」 개정법 발효 (2021. 3. 19.) 45

기고

- 디지털세 도입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 (이규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46

〈공포된 법령〉

법령명	공포일	주요내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21. 4. 20.	-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서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1. 4. 20.	-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국회 제출 법률안〉

법령명	대표발의 (날짜)	주요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 (2021. 4. 8.)	- 불법정보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은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제한하고, 해당 불법정보에 대한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의 신청자격을 피해자로 제한 -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만 적용
	김정호의원 (2021. 4. 13.)	- 중요 정보통신망연결기는 정보보호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2021. 4. 8.)	-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분야별 국가연구개발 사업 전략과 투자방향의 수립 등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박성중의원 (2021. 4. 13.)	-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위원회 설치 - 위원회는 데이터정책 기획, 데이터 거래 및 유통, 데이터이용자 보호 및 데이터재산권의 등록·보호 및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2021. 4. 27.)	- 국방정보보호의 정의에 예방뿐만 아니라 대비, 대응, 복구의 개념까지 포함 -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에는 복구체계를 포함
「데이터 산업 진흥법」 제정안	이영의원 (2021. 4. 13.)	-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을 제정하여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
「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박성중의원 (2021. 4. 13.)	- 데이터재산권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데이터재산권을 가진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부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2021. 4. 19.)	-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2021. 4. 20.)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포함 하고, 그의 준수사항으로서 대가 지급 의무를 신설 -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조정

법령명	대표발의 (날짜)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민병덕의원 (2021. 4. 20.)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 사업자들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신속한 고충처리와 분쟁조정절차, 피해구제를 위한 단체소송 제도 등 도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2021.4. 6.)	- 현행 이용약관 신고제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수리 또는 요금제 승인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정희용의원 (2021.4. 23.)	-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콘텐츠의 공급을 강요하거나 무단으로 콘텐츠를 방송하는 행위를 추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2021.4. 6.)	-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동차의 제어·상태정보, 운행정보와 주행환경 인지를 위한 자동차, 보행자, 도로 등의 위치·상태정보 등에 대하여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자율주행차량 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2021.4. 13.)	-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생성한 정보에 대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규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2021.4. 13.)	- 데이터재산권의 등록 및 분쟁 업무 등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 데이터위원회를 설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2021.4. 30.)	- 알고리즘을 ‘어떤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산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정의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한준호의원 (2021.4. 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여금 각 부처의 IoT정책을 연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국제협력, 표준화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진흥체계를 구축 - IoT 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 IoT 혁신단지 조성 및 지원, 식별체계 마련, 품질인증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2021.4. 13.)	-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과 같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국내 입법 동향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포 2021. 4. 20., 시행 2021. 4. 20.)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개정이유

-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기술혁신이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금융산업 역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세계 각국은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 육성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함께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바, 한국 역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법률 제16183호, 2018. 12. 31. 공포, 2019. 4. 1. 시행)하였으며, 2021년 3월 현재 총 139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혁신금융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 안전성이 입증되더라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2+2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주요내용

-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금융관련법령의 정비가 결정된 경우 지정기간이 연장되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10조제1항 개정 및 제10조의2 신설 등)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내 입법 동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공포 2021. 4. 20., 시행 2021. 4. 27.)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개정이유**

-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부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한편 사회적으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음
-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몇몇 온라인 플랫폼 운영회사들은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 수수료, 광고료를 과대하게 요구하는 한편, 차별적 오픈리스트 정책 등 편법운영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 소상공인의 몰락은 자칫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소상공인 스스로도 협동조합 결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주요내용**

- 정부가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9조제4호 신설 등)

※ Refere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내 입법 동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 대표발의, 2021. 4. 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2020년 한 해 동안 검찰에 접수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18,348건으로서, 같은 기간 접수된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보다 많은 실정임
- 그런데 현행법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고소·고발의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최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7조제1항에 대하여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의 적시까지 형사처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비범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현행법 제70조제1항의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 또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거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등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의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한편, 현행법 제44조의7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 대상이 되는 불법정보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제한하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불법정보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은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제한하고, 해당 불법정보에 대한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의 신청자격을 피해자로 제한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
- 명예에 관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3항)
 - ※ 이 법률안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2021. 4. 1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침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에 중대한 위험성을 가져오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대하여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정보보호인증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는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되어 각 가정에 설치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정보보호인증을 거치지 아니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는 해킹에 취약점을 드러내어 중대한 보안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높으므로, 중요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대하여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주요내용

- 중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는 정보보호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제2항 및 제76조제1항제6호의4 신설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2021. 4. 8.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정부의 연구개발 총 예산규모는 27조 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하였고,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도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규모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투자의 전략성 확보와 효율적 배분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전략의 마련이 필요함
- 그런데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연구개발투자의 기획기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로 부여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기후에너지, ICT, 소재 분야 등 장기적인 시각으로 체계적인 투자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전략이 부재하여 각 기관별로 단기적인 사업들이 중복,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

▶ 주요내용

-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과 투자방향의 수립 등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기능 강화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전략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6항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1. 4. 1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데이터의 생산속도가 빨라지고 데이터 기반 혁신이 경제 성장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실제 IDC(international data coporation)가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데이터 경제 성장률은 2018년 기준 전년대비 10.3% 증가한 1,622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 정부 역시 2019년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을 강조하는 등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적 가치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데이터에 관한 산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데이터의 소유, 데이터의 거래관계에 관한 논의는 개인정보 외에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데이터를 재화로 인정하고, 재화에 대한 가치의 배분으로서 데이터에 관한 재산권 부여는 재화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데이터재산권의 등록 및 분쟁 업무 등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하여 데이터재산권을 보호하고, 종국적으로 데이터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데이터재산권을 보호하고 데이터의 공정하고 안전한 이용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둠(안 제3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과 위원은 데이터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지명 또는 국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4조)

-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위원회는 데이터정책 기획, 데이터 거래 및 유통, 데이터이용자 보호 및 데이터재산권의 등록·보호 및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으로 함(안 제11조)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 ※ 이 법률안은 박성중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대표발의, 2021. 4. 27.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국방정보의 전략적 보호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에 대한 평시 또는 비상사태 등 상황별 침해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국방정보의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침해에 대한 대응은 물론 침해되더라도 그로 인한 장애를 확산시키지 않고 견뎌내면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주요내용

- 국방정보보호의 정의에 예방뿐만 아니라 대비, 대응, 복구의 개념까지 포함하고(안 제2조), 국방정보 침해에 대한 대응에 복구체계를 포함하여 침해 이후 안정적이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데이터 산업 진흥법」 제정안

(이영의원 대표발의, 2021. 4. 1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데이터가 자산이 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되는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 세계 각국도 데이터 패권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음. 데이터 활용에 비교적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던 유럽연합(EU) 역시 얼마 전 “세계 디지털 전쟁에서 유럽은 미국과 중국에 주도권을 뺏겼다”고 밝히며 데이터 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규율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있으나, 민간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법제는 부재한 상황임
- 특히, 민간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세계 각국의 데이터 산업 경쟁상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 육성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됨

▶ 주요내용

-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을 제정하여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1. 4. 1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데이터의 생산속도가 빨라지고 데이터 기반 혁신이 경제 성장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실제 IDC(international data coporation)가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데이터 경제 성장률은 2018년 기준 전년대비 10.3% 증가한 1,622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 정부 역시 2019년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을 강조하는 등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적 가치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데이터에 관한 산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데이터의 소유, 데이터의 거래관계에 관한 논의는 개인정보 외에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데이터를 재화로 인정하고, 재화에 대한 가치의 배분으로서 데이터에 관한 재산권 부여는 재화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데이터재산권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데이터재산권을 가진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데이터라는 재화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이고 종국적으로 데이터 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데이터와 데이터재산권 및 데이터재산권신탁관리업 등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복제권 및 2차적데이터작성권 등 데이터재산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데이터 기여분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제12조 등)

- 데이터재산권자는 다른 자에게 데이터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공동데이터에 관한 데이터재산권의 행사는 데이터재산권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6조 등)
- 데이터재산권자가 불명인 경우에 대한 이용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8조)
- 데이터재산권은 국가데이터위원회에 등록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데이터위원회 위원장은 데이터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데이터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데이터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데이터대리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데이터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3조)
- 데이터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데이터재산권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재산권위원회를 둠(안 제30조 등)
- 데이터 거래 및 유통 등 데이터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등)
- 데이터재산권등을 가진 자가 권리 침해를 당하였을 경우 행할 수 있는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절차를 규정하고 데이터 보호를 위한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7조 및 제49조, 제50조)
- 데이터에 관한 불법복제물은 수거, 폐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및 제57조)
 - ※ 이 법률안은 박성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4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2021. 4. 19.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제14조제4항)
- 그러나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등에 대한 제14조의2에서는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성적 영상물의 경우에도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운로드 방식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하여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처벌되지 않는 것은 입법미비임

▶ 주요내용

-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2021. 4. 2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및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하며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도 이에 해당됨
- 그런데 일부 사업자는 단순히 검색어로 검색된 기사를 배열하여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이용 경향을 분석하여 기사를 배열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기사에 '매개'로 보지 않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이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기사배열 책임자 지정, 재전송받은 기사의 대체 의무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의무는 배제되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음
- 특히 최근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 콘텐츠를 자사 서비스에 포함시켜 무단으로 게재하거나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정당한 대가 지급에 대한 제도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한편, 일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관련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주요내용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포함하고, 그의 준수사항으로서 대가 지급 의무를 신설하면서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10조의2,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7까지 신설 등)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2021. 4. 2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 소비자의 선호가 몇 개의 온라인 플랫폼에 집중되어 독과점화 되는 경향이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우월한 지위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업체나 외식업 자영업자 등 온라인 플랫폼을 사업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사업자와의 중개거래에서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함
-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경제가 확대되면서 중소 판매업자나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사업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은 개선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고 이용사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내부 고충처리절차나 외부 분쟁조정 시스템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고, 이용사업자 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중개거래 조건의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전국가맹점협의회와 음식배달 온라인 플랫폼사이에서는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이 체결되기도 하였음
- 한편 EU이사회와 EU의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이사회 규칙」을 제정하였고, 동 규칙은 2020. 7. 12.부터 시행되는 등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가 만들어지는 추세임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사업자들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신속한 고충처리와 분쟁조정절차, 피해구제를 위한 단체소송 제도 등을 도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 법은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와 온라인 중개서비스 이용사업자의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중개서비스업자와 이용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수수료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사업자와 체결하는 중개계약에 필요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2조 제6조)
- 중개계약에는 이용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의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방식 및 노출 순서의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0호)과 이용사업자 및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 및 그러한 정보의 총합 형태로 형성된 정보를 이용사업자가 제공 받을 수 있는 여부,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 제공 방식 및 조건 등에 관한 내용(안 제6조제12호)이 포함되어야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중개서비스 공급을 제한, 중단, 해지하는 경우 그 내용과 이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 중개서비스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8조 및 제9조)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사업자들이 거래조건의 개선과 거래관계의 공정화를 위해 이용사업자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교섭 요청권을 부여함(제10조)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사업자의 중개거래상의 고충을 처리하는 고충처리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 이용사업자가 이용사업자단체를 구성·가입·활동하거나 교섭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한 보복행위 등을 금지하고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와 사업자 간에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명령, 시정권고, 동의의결,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적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법원이 손해와 손해액의 증명을 위해 자료 제출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이 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를 위반하여 이용사업자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중개계약 위반행위 및 변경,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불공정행위 및 보복행위의 금지,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소제기를 할 수 있는 단체와 소송허가요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2021. 4. 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유료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요금 등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방송콘텐츠를 매개하는 플랫폼으로서 이용약관과 요금의 변경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와 같은 CP(Contents Provider)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금제를 승인하는 등의 과정에 이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일방적인 의견만 반영되고 있는 실정임.
-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성적 영상물의 경우에도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운로드 방식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하여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처벌되지 않는 것은 입법미비임

▶ 주요내용

- 현행 이용약관 신고제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수리 또는 요금제 승인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송시장에서의 상대적 약자인 CP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2021. 4. 2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가입자 확대에 치중한 양적 성장에 매몰되어 방송콘텐츠의 다양성과 선택성 저고,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투자가 동반된 질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
- 특히 최근 유료방송사업자 간 인수합병으로 인해 시장집중도가 증가하여 독점으로 인한 유료방송시장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그런데 유료방송사업자와 이들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함)를 공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콘텐츠사업자”라 함) 간의 계약은 자율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협상력이 약한 콘텐츠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마다 그 내용이 상이하여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음
- 실제 현장에서는 콘텐츠의 공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콘텐츠사업자에게 콘텐츠의 공급을 요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계약가이드라인, 부관조건, 약관심사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조정 효과가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내용

-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콘텐츠의 공급을 강요하거나 무단으로 콘텐츠를 방송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유료방송시장에서 ‘선계약 후공급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대표발의, 2021. 4. 6.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이유

- 개정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 등의 민감정보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 시스템의 안전성을 개선·보완하고, 자율주행기술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제어·상태 정보, 운행정보와 주행환경 인지를 위한 자동차, 보행자, 도로, 장애물 등의 위치·상태정보 등을 수집·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주요내용

-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동차의 제어·상태정보, 운행정보와 주행환경 인지를 위한 자동차, 보행자, 도로 등의 위치·상태정보 등에 대하여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자율주행차량 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대체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빅데이터 기술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기술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대표발의, 2021. 4. 1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통신 등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생성된 이용자 관련 정보의 가치와 활용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이용자에게 제한된 범위에서 열람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용자가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보 등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주요내용

-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생성한 정보에 대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여, 이용자가 이용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 설계 등 합리적 서비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분야의 데이터 기반 관련 산업 성장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0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2021. 4. 1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데이터의 생산속도가 빨라지고 데이터 기반 혁신이 경제 성장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또한 데이터를 재화로 인정하고, 재화에 대한 가치의 배분으로서 데이터에 관한 재산권 부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데이터의 소유, 데이터의 거래관계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 주요내용

- 데이터재산권의 등록 및 분쟁 업무 등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하여 데이터재산권을 보호하고, 데이터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9호 신설)
- ※ 이 법률안은 박성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4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육의원 대표발의, 2021. 4. 30.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산업화시대와 정보화시대를 거쳐 현대는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생산과 유통 또는 그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그리고 그 기술들이 융합된 기술이 고도화된 지능정보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이러한 지능정보화시대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에 필수적인 개념인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를 향후 많은 다른 법령등에서도 사용 및 인용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능정보화 분야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현행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음

▶ 주요내용

- “알고리즘”을 ‘어떤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산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정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한준호의원 대표발의, 2021. 4. 2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 최근 세계 각국은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앞다투어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추세임. 특히 사물인터넷은 유·무형의 객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끌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음
-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네트워크 등 모든 ICT 기술을 융합하고 데이터 서비스를 구현하는 사물인터넷(이하 “IoT”라 함)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여야 하지만 현재 법적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동 제정안을 통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여금 각 부처의 IoT정책을 연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국제협력, 표준화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진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이와 함께 IoT 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 IoT 혁신단지 조성 및 지원, 식별체계 마련, 품질인증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IoT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안 기준 마련, 보안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IoT가 디지털뉴딜을 선도하고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 법은 지능형 사물정보통신의 진흥 및 그 이용을 활성화하고 사물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사물정보통신에 관한 시범사업·연구개발사업 및 표준화의 추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
- 정부는 사물정보통신의 진흥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물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물정보통신서비스의 편의성·안정성·신뢰성 등에 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물정보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사물정보통신기반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사물정보통신의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형 사물정보통신의 안정화·활성화 및 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능형 사물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지능형 사물정보통신기반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정부는 사물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사물정보통신서비스가 적용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 및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규제특례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형 사물정보통신을 활용한 기술·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제가 지능형 사물정보통신의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탄력적 적용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 지능형 사물정보통신사업자는 제한된 공간 및 시간 내에서는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29조)
- 정부는 지능형 사물정보통신의 진흥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 사물정보통신에 관한 시험·평가·인증을 간소화하거나 일원화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0조)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국내 입법 동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2021. 4. 13. 제안)

▶ 소관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가상화폐 관련 범죄의 경우 금융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규정이 미비하여 금융관련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를 신고 수리 과정에서 가려내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주요내용

-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과 같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들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 Reference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해외 입법 동향

미국 매사추세츠주 하원, 디지털 광고 서비스 관련 3개 법안 검토 착수 (2021. 3. 29.)

메릴랜드를 필두로 미국 주정부들의 디지털 광고 과세 입법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매사추세츠 하원이 디지털 광고 과세와 관련하여 발의한 3개 법안에 대해 검토에 착수 (2021. 3. 29.)

▶ 개요

- 미국 매사추세츠주 하원은 디지털 광고 서비스 과세에 관해 발의된 총 3개의 법안에 대해 하원 조세공동위원회가 지난 3월 29일부터 법안 검토에 착수
 - 검토에 들어간 법안은 각각 ▲「디지털 광고 서비스 변동 과세법안¹⁾」 ▲「디지털 광고 서비스 고정 과세법안²⁾」 ▲「디지털 광고 서비스에서 파생된 연간 총매출 산정 방식 연구를 위한 ‘특별 위원회’ 설치 법안³⁾」
- 미국의 디지털 광고 서비스 과세는 2021년 2월 메릴랜드주가 최초로 관련 법률을 제정⁴⁾한 이후, 현재 뉴욕주와 텍사스주를 비롯한 여타 주에서도 디지털 및 데이터세 부과를 위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검토 중인 상황

▶ 주요내용

① 「디지털 광고 서비스 변동 과세법안」(HD.3210)

- (개요) 매사추세츠주 내 디지털 광고 서비스에서 파생된 연간 총매출에 연동하여 과세를 의무화
 - 메릴랜드 법과 텍사스 법안에서는 과세 대상에 관한 결정 권한을 주 세무 관서에 위임한 반면, 매사추세츠 법안에서는 법안 자체 내에서 과세의 원천을 명시적으로 결정

1) HD.3210. An Act establishing a tax on local revenues from digital advertising
2) HD.3601. An Act relative to taxation of digital advertising services
3) HD.3558. An Act to establish a digital advertising revenue commission
4) [2021년 2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61호 참고

- (과세 대상) 디지털 광고 서비스는 배너 광고, 검색 광고, 삽입 광고 및 프로모션/스폰서 콘텐츠 등의 형태를 활용한 디지털 인터페이스상의 광고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제1절)
 - 서비스가 매사추세츠주 IP 주소 기기상에서 제공되거나 주 내에서 기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러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사용자의 기기상에서 제공되는 경우, 해당 광고 서비스는 매사추세츠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 대상에 포함(제2절)
- (세율) 납세자의 매사추세츠 내 총 연매출에 따라 디지털 광고 서비스에서 파생된 연매출의 5~15% 범위 내에서 과세(제2절)
 - 최저 세율(5%)은 총 연매출 5,000만 달러~1억 달러, 최고 세율(15%)은 총 연매출 2억 달러가 초과되는 자에 각각 해당
 - 한편 매사추세츠 내 디지털 광고 서비스 연매출이 최소 10만 달러 이상인 자는 매출 발생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납세 신고를 의무화

② 「디지털 광고 서비스 고정 과세법안」(HD.3601)

- (개요) 매사추세츠주 내 발생 디지털 광고 서비스 매출에 일괄적으로 5% 세율의 세금을 부과
- (과세 대상) HD.3210과 달리, 사용자가 매사추세츠 내 기기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추정되는 것과 상관없이, 사용자 기기의 IP 주소만을 토대로 매사추세츠주 내 디지털 광고 서비스를 규정(제2절)
- (세율) 주 내 디지털 광고 서비스 연매출 2,500만 달러 초과자를 대상으로 일괄 5%의 세금을 부과(제2절)
 - 납세자는 월 단위의 빈번한 주기로 세금 납부 부담을 지니게 됨

③ 「디지털 광고 서비스에서 파생된 연간 총매출 산정 방식 연구를 위한 ‘특별 위원회’ 설치 법안」(HD.3558)

- 글로벌 연매출 1억 달러 이상의 기업이 매사추세츠주 내에 디지털 광고를 전송해 발생시킨 매출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 공동 위원회(special joint commission)’ 구성을 골자로 함(제77절)
 - 동 위원회는 디지털 광고 과세와 관련된 여타 주의 경험과 정책 연구를 실시하여 2022년 2월 15일까지 연구 결과와 권고안을 제출하여 법제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시사점

- 이번 법안은 앞서 메릴랜드주의 디지털 광고 서비스 법률에서 도입된 용어 개념과 과세 내용을 상당 부분 차용하며 법제상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
 - 법안에 사용된 사용자(users), 디지털 인터페이스(digital interfaces) 등의 용어들은 메릴랜드 법의 정의를 빌어 왔으며, 납세 보고 시 주 내 디지털 광고 서비스로부터 파생된 연간 총매출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별도의 문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 점도 유사
- 특히, 이번 매사추세츠주 「디지털 광고 서비스 변동 과세법안(HD.3210)」의 경우 과세율이나 디지털 광고세 적용 범위 면에서 기존 법 대비 비교적 높은 강도의 과세 기준이 적용
 - 과세율 면에서 메릴랜드 주법의 2.5%~10% 대비 매사추세츠주 법안에서는 5~15%로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과세율을 책정
 - 또한, 메릴랜드 주법 대비 디지털 광고의 범위를 프로모션/스폰서 콘텐츠 등까지 포함하여 확대 정의함으로써, 테크 업계에서는 법 해석의 자의성과 법 적용의 남용을 통한 집행 우려도 제기
- 디지털 광고 서비스 제공사 입장에서 볼 때, 최근 미국 주에서 입법, 심의되고 있는 관련 법안들은 연방법과 상충된다는 문제 제기가 가능
 - 연간 총매출은 주별로 상이한 영업 활동 상황에 근거하여 책정되기 때문에 메릴랜드 주법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 「통상 조항(Commerce Clause)」의 공정 분담(fair apportionment)⁵⁾과 차별금지(no discrimination)⁶⁾ 규정에 위배될 수 있음
- 현재 발의된 세 개의 법안 중 「디지털 광고 서비스 변동 과세법안」과 「디지털 광고 서비스 고정 과세법안」은 상호 충돌되는 법안으로, 논리적으로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되기는 어려움
 - 동 법안은 위원회에서의 논의 및 검토 과정을 거쳐 두 법안 중 하나의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거나 또는 두 법안을 접목시킨 제3의 법안 형태로 수정되어 최종 통과될 것으로 전망됨

※ Reference

<https://malegislature.gov/Bills/192/HD3601>

<https://malegislature.gov/Bills/192/HD3558>

<https://trackbill.com/bill/massachusetts-house-docket-3210-an-act-establishing-a-tax-on-local-revenues-from-digital-advertising/2039565/>

<https://www.saltsavvy.com/2021/04/11/massachusetts-joins-the-digital-advertising-tax-wave/>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will-massachusetts-jump-off-the-digital-advertising-tax-cliff-behind-maryland-or-look-before-it-leaps>

5) 주정부는 납세자 수입의 공정한 몫(fair share) 이상으로 과세할 수 없음

6) 주정부는 주내 납세자와 주의 납세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됨

해외 입법 동향

**미국 연방대법원, Facebook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1991년
전화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 (2021. 4. 1.)**

미국 연방대법원은 Facebook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1991년 전화소비자보호법¹⁾」을 위반했다는 연방고등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함 (2021. 4. 1.)

▶ 개요

-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1년 4월 1일 Facebook이 원고²⁾에게 보낸 알림문자메시지는 임의 또는 순차번호생성기(a random or sequential number generator)를 사용하여 얻은 전화번호로 보낸 것이 아니므로 동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으로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함³⁾
- 이 법에서 규정하는 자동발신시스템(automatic telephone dialing system)은 임의 또는 순차번호 생성기를 사용하여 전화번호를 생성 또는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이를 통해 얻은 전화번호로 발신하는 기능을 갖춘 장비
- 연방대법원은 Facebook이 임의 또는 순차번호생성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자동발신시스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동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

▶ 쟁점

- (쟁점 법조항) 텔레마케팅과 자동발신시스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미국연방통신법」 제227조⁴⁾

1) The 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 of 1991 (TCPA)

2) i) Facebook은 연방고등법원 판결에 불복,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기 때문에 대법원 심리에서는 Facebook이 원고(항고인)가 되고, 노아 두귀드(Noah Duguid)는 피고(피항고인)이 되는 것이나 이해의 편의상 연방 1심 재판에 최초의 소송을 제기한 노아 두귀드를 원고로 표기

ii) 본 소송은 추정적 집단소송(Putative Class Action)으로 노아 두귀드(Noah Duguid) 외 복수의 원고가 있으나, 편의상 단수로 표현

iii) 집단소송이 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 그전까지는 추정적 집단소송으로 심리가 진행됨

3)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이번 판결은 반대의견 없이 9-0 전원합의 판결로 결론

4) 47 U.S Code Telecommunications, Section 227 Restriction on Use of Telephone Equipment. 「1991년 전화소비자보호법」이 법률로 확정된 후, 「미국연방통신법 227조」로 삽입됨.

조항	세부 내용
제227조제a항	제1호 (정의) 자동발신시스템은 다음 기능을 갖춘 장비를 의미 - A. 임의 또는 순차번호생성기를 사용하여 전화번호를 생성 또는 저장 - B. 그를 통해 얻은 전화번호로 발신
제227조제b항	제1호 (금지) 긴급목적 및 수신인의 사전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전화시스템 또는 인공 음성 또는 사전녹음된 음성 ⁵⁾ 을 이용하여 전화하는 행위는 불법

- (쟁점 사항) 이번 「전화소비자보호법」 위반 사건의 주요쟁점은 아래와 같음
 - 임의 또는 순차번호생성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발신할 수 있다면 이것이 자동발신시스템의 정의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원고는 Facebook에 계정을 만든 적이 없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제공한 적도 없음⁶⁾에도 Facebook은 원고에게 수차례 접속 시도 경고 문자를 보냄
- 원고는 알림문자 발송중지를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
- 원고는 Facebook이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자동문자메시지 발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전화소비자보호법」 위반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함
- 연방지방법원은 원고가 소장에 법 위반의 요건 사항인 임의 또는 순차번호생성기 사용여부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의 Facebook의 소송 기각 청구를 받아들임
- 연방항소법원은 원고가 연방지방법원에 관련법 하에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자동발신시스템은 임의 또는 순차번호 생성기를 사용할 필요 없이 저장된 번호로 자동발신하는 기능만 가지면 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 Facebook은 해당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

▶ 연방대법원 판결 주요내용

- ① “임의 또는 순차번호생성기를 사용하여” 라는 문구는 “생성” 및 “저장” 두 동사 모두를 꾸미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문해석 규칙에 맞다고 판단

5) robocalls로 통칭됨

6) Facebook은 원고의 전화번호가 이전에 Facebook 계정에 사용되었던 전화번호의 재사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 연속된 수사어구 규칙(Series-Qualifier Canon)⁷⁾에 의하면 명사 또는 동사가 연속으로 병렬되었을 때는 그 단어들의 앞 또는 뒤에서 꾸며주는 말은 병렬된 전체의 명사 또는 동사에 적용
 - “임의 또는 순차번호생성기를 사용하여” 라는 말 앞에 “생성” 또는 “저장”이라는 단어가 연속으로 병렬 배치되어 있으므로, 꾸밈의 대상은 “생성”, “저장” 두 동사 모두에 적용
 - “임의 또는 순차번호생성기를 사용하여” 라는 말은 또는(or)으로 결합된 두 동사(“생성”과 “저장”)의 바로 뒤에 배치되어 두 단어에 공통으로 적용
 - “임의 또는 순차번호생성기를 사용하여” 라는 말 앞에 쉼표가 있어 바로 앞의 동사 “저장” 뿐만 아니라, “생성”을 포함한 전체 절에 적용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다고 해석
 - 전술의 이유로 연방대법원은 “임의 또는 순차번호생성기를 사용하여” 라는 말이 “저장”이라는 동사에만 적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한편, 법에서 정의하는 자동발신시스템은 번호의 “저장” 또는 “생성”과 관계없이 반드시 임의 또는 순차번호생성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시
 - 따라서, Facebook의 접속알림 문자시스템은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동발신 시스템이 아님

② 법에서 금지하는 자동발신시스템은 임의 또는 순차번호생성기를 사용하는 장비라는 법조항을 재확인함

- 전화소비자보호법에서 자동발신시스템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함
 - 동법이 ▲자동발신시스템이 응급전화와 수신 시 비용을 부담하는 회선으로 발신⁸⁾하는 행위 및 ▲다회선 전화를 사용하는 회사가 자동발신시스템을 사용하여 복수의 전화선을 동시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불법화한 것은 텔레마케팅 특별 장비를 규제하려는 목적
 - 즉, 텔레마케팅 장비가 자동발신시스템을 이용, 응급전화선에 무작위로 발신하거나 한 회사가 연속적으로 전화번호 회선을 장악해버리는 위험을 방지하려는 취지
 - 따라서 자동발신시스템의 범위를 단순히 ‘저장된 번호로 자동발신하는 장치’까지 넓히면 의회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원고의 주장대로 저장된 번호로 전화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를 모두 자동발신시스템으로 규정하면 ▲단축번호 발신 ▲자동완성문자메시지 전송 등 휴대전화의 일상적인 기능을 사용하는 모든 휴대전화

7) 판결문에서는 Antonio Scalia와 Bryan Garner의 『Reading Law』를 인용.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법해석 시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

8) 법제정 당시인 1991년에는 휴대전화 수신 시에도 수신자에게 통화료가 청구되었음

사용자가 전화소비자보호법의 법적책임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됨

▶ 시사점

- 연방대법원이 자동발신시스템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전화소비자보호법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침⁹⁾과 동시에 이후 관련 소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임의 또는 순차 번호생성기 사용하지 않는 자동발신시스템 통해 전화발신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하는 기업은 기존의 영업 방식을 유지할 수 있고 소송의 걱정을 덜 수 있음
- 이번 판결은 인공음성, 사전에 녹음된 음성은 여전히 규제 대상임을 밝히고 있어서 규제의 완화로 볼 수는 없음
- 이번 판결은 넘쳐나는 스팸전화와 문자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지키지 못했으며 소비자 보호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즉각적 반발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전화소비자보호법」 개정 움직임을 촉발¹⁰⁾

※ Reference

<https://www.fcc.gov/sites/default/files/tcpa-rules.pdf>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4de3eedb-9f97-4904-b15e-1774f32b9715>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904bc36a-521d-4572-adfb-a992ede0d7ad>

<https://www.markey.senate.gov/news/press-releases/senator-markey-and-rep-eshoo-blast-supreme-court-decision-on-robocalls-as-disastrous>

9) 현재 미국 연방 및 각주의 법원에서 5,000 건 이상의 전화소비자보호법 관련 소송이 진행 중

10) 에드워드 마키(Edward John Markey) 연방상원의원과 애나 에슈(Anna G. Eshoo) 연방하원의원은 본 판결을 비판하며 「전화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해외 입법 동향

미국 텍사스 주 상원,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정치 성향 표현에 대한 검열 금지 법안 통과 (2021. 4. 1.)

미국 텍사스 주 상원은 「소셜미디어의 사용자의 표현에 대한 검열, 검열 기준에 대한 공개 의무, 검열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법안¹⁾」을 통과 (2021. 4. 1.)

▶ 개요

- 미국 텍사스 주 상원이 지난 4월 1일 통과시킨 「소셜미디어의 사용자의 표현에 대한 검열, 검열 기준에 대한 공개 의무, 검열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법안」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주요 소셜미디어의 사용자 게시물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동 법안은 기존 「상법 규정²⁾」에 소셜미디어 플랫폼 절³⁾과 기존 「민사소송 및 권리구제 규정⁴⁾」에 웹기반 인터랙티브 플랫폼 절⁵⁾을 추가
 - 상원에서 18대 13⁶⁾로 통과하였으나, 법률의 최종 확정을 위해서는 하원의 법안 심의 및 표결과 주지사의 서명 절차가 남음
- (배경) 공화당 정치인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가 보수파에 대한 편견에 기반하여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
 -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지난 1월 6일 연방국회 난입 사건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의 폭력사태 지지 게시물을 검열하고 해당 계정을 사용정지 시킴
 - 텍사스 주지사⁷⁾는 지난 3월 초 기자회견에서 소셜미디어 서비스가 보수적 이념과 종교적 신념을

1) Relating to complaint procedures and disclosure requirements for social media platforms and to the censorship of users' expressions by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TX SB12)

2) Business and Commercial Code

3) Chapter 113. Social Media Platform

4) Civil Practice and Remedies Code

5) Chapter 143A. Discourse on Interactive Web-Based Platform

6) 텍사스 상원은 총 31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안 통과일 기준 (2021년 4월 1일), 공화당 18석, 민주당 13석 차지

7) Greg Abbott, 공화당 소속 주지사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

- 트위터는 지난 1월 연방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된 음모이론 그룹인 QAnon과 연관된 7만 개 이상의 계정을 제거

▶ 주요내용

- (검열 금지) 소셜미디어는 사용자의 관점과 지리적 위치에 근거하여 사용자, 사용자의 표현, 또는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표현을 수신하는 능력 등을 검열하는 것을 금지
 - 단, ▲아동 성착취물 ▲아동성학대 희생자의 보호 관련 ▲인종 · 종교 · 국적 · 연령 · 성별 등에 반하여 행해지는 폭력 또는 범죄행위의 직접적 고무 등은 검열 금지 대상에서 제외
- (적용 대상) 동 법안은 월 단위 1억 이상의 유효 사용자(active user)를 보유한 소셜미디어와 텍사스 주민, 텍사스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텍사스에서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수신하는 사람에게 적용
- (정보 공개 의무) 소셜미디어는 사용자에게 ▲콘텐츠 게시, 홍보, 목표, 배치하는 방식 ▲콘텐츠 관리, ▲데이터 관리 ▲영업 방식에 관한 정확한 정보 등을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해야 함
- (사용 정책) 소셜미디어는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사용 정책을 게시해야 함
 - 사용 정책에는 ▲허용 가능한 콘텐츠 종류 공지 ▲정책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확정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 ▲불법 콘텐츠, 불법적 활동 및 사용정책 위반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알리는 수단에 대한 설명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소셜미디어는 사용 정책의 일환으로 ▲불법 콘텐츠, 불법적 활동으로 경고 조치된 총 건수 ▲게시물 삭제, 계정 중지, 계정 삭제, 수익창출 금지 게시물의 총 건수 등을 포함한 분기별 보고서를 게시
- (이의 절차) 소셜미디어는 불법 콘텐츠, 불법적 활동, 게시물 삭제 등에 대해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의 절차 시스템을 제공해야 함
- (집행) 주 검찰총장은 해당 법을 위반하는 소셜미디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 시 소송비용 청구 가능

▶ 시사점

- 이번 법안은 민주당 의원의 참여 없이 공화당 의원들만으로 발의된 것으로 당파적 성격이 매우 강함
 - 월 사용자 1억 이상의 유효 사용자를 보유한 소셜미디어로 규제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보수파에게 인기 있는 팔러(Parler) 및 갭(Gab)⁸⁾ 등 유효 사용자 200만 이상의 소셜미디어가 제외되었다는 점도 이런 성격을 반영
- 법안의 논쟁적 성격과 위헌 가능성으로 인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더라도 적법성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 높음
 - 동일한 법안이 2019년에 이미 상원을 통과한 후, 공화당이 과반을 확보한 하원⁹⁾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전력이 해당 법안의 논쟁적 성격을 대변
- 동 법안 외에도 3월 25일 개정된 「2021 조지아 주 선거 통합법¹⁰⁾」은 부재자 투표의 요건을 강화하고 제한하고 있으며, 4월 15일 텍사스 하원을 통과한 법안¹¹⁾은 무면허 권총을 공공장소에서 휴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보수 성향의 법들이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주에서 추진되고 있음

※ Reference

<https://www.dallasnews.com/opinion/commentary/2021/03/21/texas-gops-unconstitutional-senate-bill-12-cant-and-wont-compel-better-behavior-from-big-tech/>
<https://www.washingtonexaminer.com/news/texas-senate-green-lights-bill-prevent-social-media-censoring>
<https://www.texastribune.org/2021/03/30/texas-social-media-censorship/>
<https://thehill.com/policy/technology/546002-texas-senate-passes-bill-banning-social-media-platforms-from-banning-texans?rl=1>
<https://capitol.texas.gov/tlodocs/87R/billtext/pdf/SB00012E.pdf>
<https://legiscan.com/TX/text/SB12/id/2317860>

8) 미국에서 각각 2018년, 2016년 설립된 대안 소셜미디어 서비스로 극우 그룹에서 즐겨 사용하는 신생 SNS

9) 텍사스 하원은 총 150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화당이 83석 민주당이 67석 차지

10) Georgia's Election Integrity Act of 2021

11) Texas HB 1911

해외 입법 동향

미국 상원, 연방정부 기기에서 특정 소셜미디어 앱의 사용금지 재발의 법안 통과 (2021. 4. 15.)

미국 상원은 2020년 해당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법제화되지 못했던 「정부기관 지급의 전자기기에서 틱톡 사용금지 법안¹⁾」을 재발의 및 통과 (2021. 4. 15.)

▶ 개요

- 미국 상원이 가결한 「정부기관 지급의 전자기기에서 틱톡 사용금지 법안」은 연방정부 및 정부기업²⁾에서 지급하는 모든 전자기기에서 틱톡³⁾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거나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함
- (배경) 2020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내에서의 틱톡 사용금지를 추진하였으나, 최종적인 법제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2021년에 재추진되는 상황
 - 2020년 7월 21일, 연방하원에서 정부소유 전자기기에서의 틱톡 사용금지 내용을 포함시킨 「2021년 국방수권법⁴⁾」 수정안 통과
 - 2020년 8월 6일, 연방상원에서 동 법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 통과 후 연방하원 통과 실패
 - 2020년 8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틱톡과 위챗(WeChat)⁵⁾ 전면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⁶⁾을 내렸으나, 이후 연방법원에서 행정명령 금지 판결로 무산

1) No TikTok on Government Devices Act

2) 미국 연방정부의 국영기업 (Government Corporation)은 의회에서 법률로 정하며, 미국 연방정부가 해당기업의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가리킴.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국영기업으로는 수출입은행, 연방국물보험공사 등이 대표적이며, 지분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연방예금보험공사, 연방주택대출은행 등이 대표적이다

3) TikTok. 2016년 출시된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으로 2020년 7월 기준 미국 내에서만 월 9천만 명 이상의 활동 사용자 (active user)를 보유. 모회사는 바이트댄스 (ByteDance) 사라는 중국회사

4) 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2021. [2020년 12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59호 참고

5) 2010년 중국에서 개발, 출시된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2019년 기준 월 10억의 활동 사용자가 있으며, 이중 90% 이상이 중국 내에서 사용

6) 바이트댄스 사가 틱톡 애플리케이션을 미국 회사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 전면 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내용

- (금지 배경) 중국회사가 소유한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공산당에 보고되고 있으므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틱톡과 같이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법제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금지 내용) 정부 내 모든 근무자들이 미국 연방정부 또는 정부기업에서 지급하는 전자기기에서 틱톡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 (금지 대상)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틱톡 애플리케이션, 그 후속 애플리케이션, 바이트댄스 사 또는 바이트댄스 사 소유회사에서 개발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 (이행 시기 및 방식) 법률로 확정 후 60일 이내에 예산관리국장(Director of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사이버안보 및 기반시설안보국장(Director of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국가정보국장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방부 장관 (Secretary of Defence) 등은 관련 연방법에 의거, 본 법안에 적용되는 정부부처가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기 위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
- (예외) 국가안보와 연구를 목적하는 다음 경우는 예외로 둠
 - 법률의 집행, 국가안보 이익과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및 안보 연구자
 - 위 예외 조건 하에서 인가된 사용. 단, 정부부처는 예외적 사용에서 발생하는 위험 경감을 위한 개발조치 및 문서화를 이행해야 함

▶ 시사점

- 바이든 정부는 틱톡 금지 등을 포함한 특정국가의 정보기업에 대한 대응이 트럼프 정부와는 다른 신중한 방식일 것으로 진행
 - ▲바이든 정부, 쟁점 사항의 면밀한 검토를 이유로 연방법원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금지 판결에 대한 항소 심리의 연기를 요청 ▲ 바이든 정부에 의해 틱톡 매각 협상이 보류된 점 ▲ 국가안전보장회의 (National Security Council) 의 에밀리 혼 (Emily Horne) 대변인이 중국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미국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앱에 대해 “종합적 접근”을 할 것이라고 밝힌 점 등이 이런 흐름을 반영

- 국토안보부, 국방부, 교통안전국(TSA)⁷⁾에서는 이미 틱톡 사용금지 시행 중⁸⁾이며, 따라서 정부부처 전체로 전면 확대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음
- 연방하원에 동일한 법안이 제출된 점으로 볼 때 특정 적대국 정보기업의 안보 위협 논쟁은 바이든 정부의 기초와 상관없이 공화당, 보수파에 의해 지속될 것을 전망

※ Reference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16/s3455>

<https://abcnews.go.com/Technology/republican-lawmakers-revive-efforts-ban-tiktok-government-devices/story?id=77091017>

<https://www.wsj.com/articles/tiktok-sale-to-oracle-walmart-is-shelved-as-biden-reviews-security-11612958401>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0663f958-40a8-4c8b-9a65-4cffcf6f0960>

<https://www.businessinsider.com/trump-administration-wont-enforce-tiktok-ban-following-court-order-2020-11>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20/jan/3/state-department-and-dhs-ban-tiktok-government-iss>

<https://www.theverge.com/2019/12/31/21044559/us-army-bans-soldiers-from-using-tiktok>

<https://www.businessinsider.com/us-government-agencies-have-banned-tiktok-app-2020-2#7-this-week-tsa-became-the-latest-agency-to-specifically-ban-the-app-7>

7)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 공항, 항구, 철도 등 모든 대중교통 시스템 통제 임무 수행

8) 2019년 12월에서 2020년 2월 사이 국토안보부, 국방부, 교통안전국은 내부적으로 정부 소유 전자기기에 틱톡 사용을 금지시킴

해외 입법 동향

미국 연방 상원, 빅테크 단속 법안 발의 (2021. 4. 19.)

미국 연방 상원에서 거대 온라인 판매 플랫폼과 호스팅·백엔드 서비스 기업들의 시장 독과점적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 (2021. 4. 19.)

▶ 개요

- 미국 연방 상원에서는 Amazon, Google과 같은 거대 온라인 기술 기업이 다른 판매자의 제품 및 서비스와 함께 자체 제품 및 서비스 판매를 금지하는 「빅테크 단속 법안¹⁾」을 발의
 - 동 법안은 검색 엔진, 마켓플레이스 및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써드파티 기업과 경쟁하는 방식으로 제품과 재화를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주요내용

- (대상) 「빅테크 단속 법안」은 서비스 이용자 수와 글로벌 매출을 기준으로 동 법안의 대상 사업자를 정의(제2절(a)(3)(A))
 - 직전 12개월 동안 한 달이라도 미국 내 3,000만 명 또는 전 세계 3억 명 이상의 이용 접속자가 발생했거나, 직전 과세연도 기준으로 글로벌 매출 15억 달러 이상을 달성한 온라인 판매 플랫폼과 온라인 호스팅·백엔드 온라인 서비스 등을 법안의 대상 사업자로 함
- (온라인 판매 플랫폼 금지 규정) 자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소매 플랫폼상에서 자사의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 광고 및 프로모션 행위를 할 수 없음(제2절(b)(1))
 - 법안 발효 후 1년 이후부터 자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플랫폼상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 광고 및 프로모션 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한 제휴, 소유권 또는 권리 행사를 중단해야 함

1) The Bust Up Big Tech Act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자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플랫폼상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 광고 및 프로모션 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한 인수나 지분을 확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온라인 호스팅·백엔드 온라인 서비스 금지 규정) 써드파티 기업을 대상으로 자사의 온라인 호스팅 서비스 또는 백엔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²⁾(제2절(b)(2))
 - 온라인 호스팅 서비스 또는 백엔드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대한 인수나 지분을 확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관리 집행 규정) 연방거래위원회(FTC)³⁾에 기업 규정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기업들이 규정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제2절(c))
 - 일반 시민 역시 거대 온라인 기업이 동 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배상을 위한 제소를 허용하며 위반 건 별 인당 최대 100만 달러 이내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음
 -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규정준수를 모니터링할 직원을 고용토록 함
 - 또한, 동 위원회는 개별 거대 온라인 기업의 법안 준수 여부에 대한 연 단위 감사를 위한 설계와 감독을 실행해야 함
 - 이와 같이 동 법안은 온라인 기업이 법안의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무부에 집행 권한을, 시민에 제소 권한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법적 제소 절차를 보장

▶ 시사점

- 동 법안을 발의한 의원 측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과거 수년 동안 미국 정치권으로부터 과도한 보호를 받아 왔으며 법안 도입의 배경을 설명
 - 이들 기업들은 축적된 막대한 데이터 자산과 기술력을 통해 자사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인 견해를 검열하고, 소비자들에게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들을 배제하는 데 활용했다는 것
 - 해당 발의자는 거대 기술 기업의 반독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가총액 1,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들의 인수 합병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21세기 독과점 단속 법안⁴⁾」도 발의한 바 있음

2) Amazon의 경우 Amazon Web Services를 통해 써드파티 기업에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
3) Federal Trade Commission
4) Trust-Bust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Act

-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제 입법과 함께 온라인 거대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향후 각 주에서도 이들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유사 법안이 지속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
 - 하원 법사위원회(The House Judiciary Committee)에서는 지난 4월 14일 디지털 시장의 독점적 경쟁 지위에 관한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삼기 위한 ‘디지털 시장 경쟁 조사 보고서(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를 공표
 - 2019년 6월부터 상원 법사위원회(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의 반독점 소위원회(subcommittee)는 Apple과 Google 등 디지털 기업의 관계자를 소환해 앱스토어 경쟁에 관한 청문회를 진행하며 각계 인사들로부터 디지털 시장의 경쟁 이슈에 관한 의견을 청취

※ Reference

<https://www.hawley.senate.gov/sites/default/files/2021-04/Bust%20Up%20Big%20Tech%20Act.pdf>
https://judiciary.house.gov/uploadedfiles/competition_in_digital_markets.pdf?utm_campaign=4493-519
<https://thehill.com/policy/technology/548930-hawley-introduces-legislation-targeting-amazon-google-antitrust-concerns?rl=1>
<https://thehill.com/policy/technology/548506-house-committee-approves-big-tech-antitrust-blueprint?rl=1>
<https://www.foxnews.com/politics/hawley-bill-big-tech-companies-google-amazon>

해외 입법 동향

영국 정부, 거대 플랫폼 사업자 견제 위해 디지털시장국 설치 (2021. 4. 7.)

영국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시장 독과점 문제 해결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경쟁시장청(CMA) 내 디지털시장국(DMU)을 설치 (2021. 4. 7.)

▶ 개요

- 영국 정부¹⁾가 디지털 부문에 대한 규제 일환으로 ‘디지털시장국(Digital Market Unit, DMU)’의 설치를 공표²⁾
 - 디지털시장국(DMU)의 주요 역할은 시장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과점 역할을 하는 이른바 ‘전략적 시장 상태(Strategic Market Status)’에 놓인 것으로 지정된 기업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개별적인 행동 규약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
 - 전략적 시장 상태의 기업에는 구글, 페이스북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 지정 기준은 공표되지 않은 상황
- 디지털시장국(DMU)은 소비자가 데이터 사용에 대한 선택권과 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온라인 경쟁 촉진을 도모하는 데 주력
 - 이를 위해 디지털시장국(DMU)은 사전 규제(ex ante regulation)와 데이터 권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얻을 계획
 - 디지털시장국(DMU)은 조직 설치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경쟁시장청(CMA)³⁾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형 디지털 기업들의 합병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 한편, 2021년 G7 의장국인 영국은 디지털 분야에서 국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위해 디지털시장국(DMU)에 연락책 역할을 부여기로 함

1)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BEIS)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가 공동으로 발표

2)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Digital Markets Unit, 2021.4.7

3) 영국의 소비자 편익 및 공정 시장 경쟁을 위한 감독기구.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 주요 내용

- (설치 위원회) 경쟁시장청(CMA) 내에 설치된 디지털시장국(DMU)은 본격 활동에 앞서 포럼 형태의 업무 운영 조직을 구성하여 동 조직이 다룰 업무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
 - 포럼에는 경쟁시장청(CMA),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포츠부(DCMS),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BEIS)를 비롯하여 통신방송 규제 기관인 오프컴(Ofcom), 정보위원회(ICO) 및 금융행위감독청(FCA)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 디지털시장국(DMU)의 활동에 관해 정부에 조언 역할과 진척 상황 모니터링을 실시
- (역할) 디지털시장국(DMU)의 설립 규정(terms of reference)⁴⁾에 따르면 동 기관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음

〈 디지털시장국(DMU)의 주요 역할 〉

역할 구분	주요 내용
법률 마련에 필요한 준비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역량을 갖춘 팀을 구성, 지침 초안을 작성하여 법률 실행과 동시에 조직 운영 태세에 착수
법률 마련과 관련된 정부 조언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시장 TF(Digital Markets Taskforce) 주도 하에 법률 마련을 위해 필요한 주요 정보와 통찰 제공 • 다양한 디지털 시장에서 디지털 플랫폼과 플랫폼에 의존하거나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하여 자신의 고객과 접점을 마련하는 소규모 기업 사이의 관계를 조정·관리하는 행동규약 검토
디지털 시장 운영에 대한 정보 및 증거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시장청(CMA)은 기존의 권한을 활용하여 필요 시 디지털 시장 내 경쟁 저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 • 이를 통해 확보된 정보와 증거를 궁극적으로 동 조직의 법률 제정 작업에 반영
산업계 및 학계 이해관계자 및 기타 국내외 규제 기관과의 관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관계 구축과 통찰 공유를 통해 국제 간 규제 조정을 위한 근간을 형성 • 현재 법률의 근거가 없는 디지털시장국(DMU) 조직 역시 후속 법제 개발 시 유연한 역할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긴밀한 협업을 추진

- 이외 디지털시장국(DMU)은 온라인 광고 기업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디지털 미디어 시장 내에서의 공정 경쟁을 위해 오프컴(Ofcom)과 협력하여 플랫폼과 콘텐츠 제공자(예: 출판사 및 뉴스 제공사) 간의 행동규약 적용방식을 검토할 예정

4) Gov.UK, Digital Markets Unit (non-statutory) – terms of reference, 2021.4.7



▶ 평가와 전망

- 영국 정부는 디지털시장국(DMU)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펼쳐왔으나 현재 동 조직은 별도의 법률적인 설치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자체 행정력 행사를 위한 법률 마련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
 - 현재까지 기업의 혁신 및 투자 촉진과 소비자 보호 간의 균형 있는 규제 설립을 두고 의회와 정부 간의 상이한 견해들이 존재
- 영국 정부는 2021년 말 디지털시장국(DMU)의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한 자문을 실시한 뒤 의회를 통해 조직 설치를 위한 관계 법률을 제정할 계획
 - 따라서 디지털시장국(DMU)의 본격적인 가동은 2022년 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 시기까지 동 조직은 향후 운영의 범위를 구상하고 적절한 행동규약을 검토하는 등 조직 정비 작업을 추진할 계획

※ Reference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on-statutory-digital-markets-unit-terms-of-reference/digital-markets-unit-non-statutory-terms-of-reference>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digital-markets-unit>

<https://www.jdsupra.com/legalnews/uk-s-digital-markets-unit-referee-has-3560986/>

해외 단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커넥티드 소비자 사이버보안 의무화 입법 착수

(Lexology, UK government confirms plans to bring in mandatory cyber security requirements for connected consumer products, 2021. 4. 26.)

-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가 2020년 7월 최초로 작성된 규제 제안서의 공공의견 수렴 결과와 함께 커넥티드 소비자의 사이버보안 관련 입법 절차에 들어갈 것을 예고
 - DCMS가 발표한 응답 문서(government response)에는 규제 대상 커넥티드 소비자의 범위, 관련 법집행 당국의 책임과 권한, 경제 주체별 역할과 요구사항 등에 관해 기술
- 동 문서의 요구사항은 '소비자 IoT 보안 관행 규약(Code of Practice for Consumer IoT Security)'과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의 'ETSI 유럽 표준 303 645'의 관련 조항을 참조로 작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비밀번호는 고유한 것이어야 하며 범용 초기화 비밀번호 형태의 설정으로 리셋 되어선 안 됨
 - 제조업체는 연락처를 공개하여 누구라도 취약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판매 시점에 고객을 대상으로 기기의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간에 대해 공지해야 함

해외 단신

싱가포르 정부, 전자 양도성 기록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전자거래법」 개정법 발효

(JD Surpa, Singapore's Electronic Transactions Act Expanded to Include Transferable Instruments, 2021. 3. 19.)

- 싱가포르 정부가 양도증권의 전자적인 거래를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자거래법 (Electronic Transactions (Amendment) Bill)」 개정법을 발효
 - 2021년 1월에 발의된 동 법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거쳐 2월 1일에 통과된 뒤 3월 19일부로 발효
 - 개정법은 「전자 양도성 기록에 관한 UN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모델법」에 준하여 환어음, 약속어음, 선하증권과 같은 국경 간 무역 문서의 디지털화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막대한 양의 서류 처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함
- 「전자거래법」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전자 양도성 기록의 효력	• 전자 양도성 기록(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은 전자 기록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 유효성 또는 집행 가능성이 거부되어서는 안 됨
서면과의 등가성 원칙	• 전자 양도성 기록이 (서면과 같이) 나중에 참조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접근 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작성되었어야 하는 필요조건을 충족한다고 봄

※ [2021년 1월] 인터넷 법제동향 제160호 참고

기고

디지털세 도입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



이규엽 경제학 박사

- (現)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통상전략팀장
- (現)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디지털세 논의의 배경

다국적기업은 세계 생산 33%, 세계 GDP 28%, 세계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55%, 49%, 세계 고용의 23%를 차지한다(OECD 2018a, 2018b). 다국적기업이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일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tax evasion) 행위가 국제사회의 주요한 이슈로서 다루어져 왔다. 다국적기업이 국가 간 세법의 차이나 조세조약의 미비점 등을 이용하여 세율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면 일부 국가의 과세기반이 잠식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과거에는 국제투자유형재화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억제가 중점이었다.

디지털세 도입이 핵심 이슈로 부상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고 가상고정사업장을 통해 영업하는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 요구가 세계 각국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디지털기업이 보유하는 무형자산의 비중이 91%에 달하기 때문에(UNCTAD 2017), 무형자산의 해외 이전 수단을 통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¹⁾ 전통제조기업과 디지털기업 간 조세 형평성 이슈도 논란이 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전통제조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3.2%에 달하나 디지털기업은 고작 9.5%에 불과하다고

1) 경제학 문헌에서 밝히는 조세회피 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이전가격 조작(transfer pricing manipulation), 둘째,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배치(strategic location of IP), 셋째, 부채이전(debt shifting), 넷째, 조세협약쇼핑(treaty shopping)이다.

주장한다(ZEW 2016). Bauer(2018)는 ZEW(2016)에서 사용된 방법론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전통제조기업과 디지털기업 간 실효법인세율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반박한다.

실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쉽지 않다. 국내에서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기업은 법인세를 부담하나, 해외 다국적기업은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표 1) 참고). 디지털기업은 고정사업장 없이 가상고정사업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므로 디지털 기술이 이윤의 원천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터넷 광고, 앱스토어, 온라인쇼핑, 클라우드 컴퓨팅 등 거래 유형에서 나타나는 공통 특징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국내에서 소비될지라도 서버가 해외에 소재하면 다국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외 소셜 미디어, 구독 모델, 공유 플랫폼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마찬가지로 지적이 가능하다(EC 2017). 각국 조세당국의 세원잠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표 1〉 해외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의 국내법인세 부담 비교

거래 유형	특징	해외 다국적기업 법인세	국내기업 법인세
인터넷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실질: 디지털 근간, 소득의 원천, 광고의 소비 장소가 국내 형식: 서버가 해외소재 	x (고정사업장 없음)	o
앱스토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실질: 디지털 근간, 소득의 원천, 용역의 소비 장소가 국내 형식: 서버가 해외소재 	x (고정사업장 없음)	o
온라인 쇼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실질: 소득의 원천, 재화의 소비 장소가 국내 형식: 서버가 해외소재 	x (고정사업장 없음)	o
클라우드 컴퓨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앱스토어와 유사 	x (고정사업장 없음)	o

자료: 김빛마로 외(2016) 〈표 III-1〉을 가공하여 저자 작성

▶ OECD 디지털세 논의의 주요 내용

디지털 경제에서 새롭게 부상한 국제조세회피 문제인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슈에 대해 OECD 회원국이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해 왔다.²⁾ OECD는 2016년 1월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를 구축하여 모든 관심국이 G20과 동등한 자격으로 BEPS 방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OECD 디지털경제 대책위원회는 2019년 10월 통합적 접근법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은 2가지 접근법을 발표했다. 현재 OECD IF에는 한국을 포함하여 130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BEPS 방지 프로젝트의 이행 지원과 미해결 쟁점을 완료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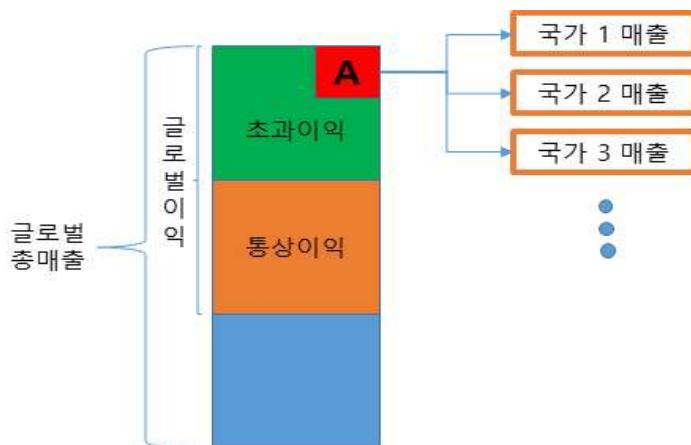
2) 소득이전은 조세회피의 수단을, 세원잠식은 조세회피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 통합적 접근법

OECD는 미국, 영국, G24가 제출한 안을 기초로 2019년 10월 통합적 접근법을 제안했다. 통합적 접근법의 기본 원칙은 크게 ▲시장소재지 과세권의 강화 ▲새로운 연계 기준 ▲기존 독립기업원칙의 수정 ▲단순성 및 조세 확실성 추구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2020년 1월 IF 총회는 디지털세를 디지털 서비스 사업(Automated Digital Services)뿐만 아니라 일부 소비자 대상 사업(Consumer-Facing Businesses)까지 포함하되, 전 세계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다국적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통합적 접근법은 물리적 실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시장소재지 내 매출 등에 근거하여 과세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과세연계성 기준(New nexus rule)을 제시한다. 일반 소비자 대상 사업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직접적인 시장 참여가 없이는 과세연계성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보며, 과세연계성 판단 시 매출액 정보와 함께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나 직접적인 마케팅 활동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반면, 디지털 서비스 사업의 경우 시장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과세연계성 판단하게 된다.

통합적 접근법은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초과이익배분(Amount A), 고정이익률 보상(Amount B), 추가기능 보상(Amount C) 세 종류로 구분한다. 다국적기업의 총매출 중 통상적 수익을 초과하는 부분인 Amount A에는 공식을 적용하여 새로운 연계점이 있는 지역에 배분된다.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 G의 글로벌 이익이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이며, X국에서의 매출이 3,000억 원, Y국에서의 매출이 7,000억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통상적 수익률을 10%로, Amount A의 비율을 20%로 합의했다면, 기업 G의 초과이익 10%(=20%-10%) 중 20%인 전체 매출의 2%(=10%*20%)가 시장소재지국 배분 이익이 된다. 각국에서 과세가능한 Amount A는 X국 60억(=3,000억*2%), Y국 140억(=7,000억*2%)이 된다.



통상이익인 Amount B는 현행 이전가격세제를 단순화하여 시장소재지국의 자회사나 지점에서 수행되는 기본적인 마케팅과 유통기능에 대해 고정된 이익률로 보상된다. 글로벌 총매출액에서 초과이익과 통상이익을 제하고 남은 Amount C는 Amount B가 적용되는 기본 기능을 넘어 시장소재지에서 수행된 특별한 기능에 대해 기존의 독립기업원칙이 적용된다.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OECD 디지털세 논의의 향배에 우리 수출기업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디지털세 적용대상은 디지털 서비스 사업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OECD는 자동차, 소프트웨어·휴대폰·가전제품, 의류·화장품·명품, 브랜드 식품·음료 등을 열거하며 소비자 대상 사업의 일부를 디지털세 적용대상의 예시로 지목하기 때문이다. 예시처럼 적용범위가 확정된다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디지털세의 영향권에 놓인다(〈표 2〉 참고).

〈표 2〉 통합적 접근법의 적용대상 업종

구분	디지털 서비스 사업	소비자 대상 사업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전세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재 품목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업체 제3의 유통업체를 통하거나, 단순 조립이나 포장을 수행하는 중개업체를 거쳐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체 제조업, 판매 및 유통업, 광고 등 간단한 마케팅 활동들을 통한 판매지원업체 라이선스 사용권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제외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 법률, 건축,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과 같이 인간의 관여 또는 판단의 정도가 높은 전문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자재 추출 산업 및 기타 원자재 및 상품 생산자 및 판매자 금융업 선박 및 항공산업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플랫폼, 온라인 중개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스트리밍,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컴퓨팅, 온라인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프트웨어, 가전제품, 핸드폰, 의복, 위생용품, 화장품 및 사치재,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및 호텔, 자동차 등

자료: 저자 작성

○ 글로벌 최저한세

글로벌 최저한세(GloBE: Global Anti-Base Erosion)는 통합접근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조세회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소득에 일정세율 이상으로 과세하자는 제안이다. 다시 말해서, 다국적기업 이익에 대한 세부담이 합의된 최저한세(예컨대 12.5%)에 미달되면 합의된 세율까지 추가 과세하는 것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미국의 GILTI(Global Intangible Low Tax Income) 제도와 유사한데 이동성이 큰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국가별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움직임과 미국의 대응³⁾

OECD BEPS 논의에도 참여해왔던 EU 이사회와 집행위원회는 2016년 이후 지속된 BEPS 논의에 합의가 부재하고 진행이 더딘 점을 지적하며 EU차원의 독자적으로 법인세 개혁을 시도했다. 그 중 프랑스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프랑스가 2019년 12월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최종 승인하자 미 무역대표부(USTR)는 프랑스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결정을 발표했다. USTR은 프랑스 디지털 서비스세가 차별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으며, 국제조세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프랑스가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대상이 주로 미국 기업이고, 부과기준 또한 미국 기업을 특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 프랑스가 명시한 디지털 서비스세 잠정부과대상 기업 26곳 중 16곳이 미국 디지털기업이었다. USTR은 프랑스에 63개 품목(HS code 8단위)을 대상으로 최대 24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했는데, 여기에는 치즈를 포함한 유제품, 와인, 화장품, 가방, 자기(porcelain) 등이 포함된다. 프랑스와 미국은 OECD BEPS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므로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조치를 2020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국별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움직임이 다시 탄력을 받았다. 2020년 5월 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세수 확충을 위해 EU 회원국에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제안했다. 미국은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고려 중인 10개국(EU+9개국)을 대상으로 통상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착수를 발표했다(〈표 3〉 참고).

〈표 3〉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검토 국가 (USTR 통상법 제301조 조사대상국)

국가	주요 내용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10월 온라인 광고서비스 매출액에 대해 5% 과세하는 디지털세 채택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부과대상은 글로벌 연간 매출액 7억 5천만 유로 이상 및 해당 서비스 국내 매출액 2,500만 유로 이상 기업
체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깃 광고 및 디지털 인터페이스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에 7%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중 부과대상은 글로벌 연간 매출액 7억 5천만 유로 이상 및 해당 서비스 국내 매출액 5천만 체코코루나 이상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깃 광고 및 디지털 인터페이스 서비스를 대상으로 매출액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부과대상은 글로벌 연간 매출액 7억 5천만 유로 이상 및 해당 서비스 국내 매출액 550만 유로 이상 기업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깃 광고 및 디지털 인터페이스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에 3%의 디지털세 부과 방안을 고려 중 부과대상은 글로벌 연간 매출액 7억 5천만 유로 이상 및 해당 서비스 국내 매출액 300만 유로 이상 기업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온라인시장 서비스 분야 매출액 중 2,5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 과세하는 디지털세 도입

3) 본고에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되는 OECD BEPS 프로젝트를 '디지털세', 개별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거나 도입되는 디지털세를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로 구분한다.

국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대상은 해당 서비스 글로벌 연간 매출액 5억 파운드 이상 및 해당 서비스 국내 매출액 2,500만 파운드 이상 기업 • 디지털세는 2020년 4월 1일부터 발효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회복기금을 조성하면서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계획 • 2018년에 도입하려던 EU 차원의 디지털세는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무산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대기업의 디지털서비스 매출액에 과세한다는 안을 고려 중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온라인 판매를 하는 non-resident 기업에 2%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디지털세가 2020년 4월 1일부터 발효 • 부과대상은 연매출액 약 267,000 달러 이상 기업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초 국경간 디지털 거래에 대한 전자상거래세 도입 추진 • 발효되지 않은 상황이며, 발효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이행이 필요
터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깃 광고, 소셜미디어, 디지털 인터페이스 서비스 매출액에 7.5%를 과세하는 디지털세가 2020년 3월 1일 발효 • 부과대상은 글로벌 연간 매출액 7억 5천만 유로 이상 및 해당 서비스 국내 매출액 2천 터키리라 이상 기업 • 터키 대통령은 과세율을 최대 15%까지 인상할 수 있는 권한 보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2021년 2월에 개최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화상회의에서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미국이 기존 반대 방침을 철회하여, 오는 7월 디지털세 타결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USTR은 2021년 3월 26일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지 않은 EU, 브라질, 체코, 인도네시아를 보복관세 검토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6개국(오스트리아, 영국,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에 대해서는 미국 디지털기업을 차별하고 국제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하면서 트럼프 때부터 검토해왔던 보복관세를 여론수렴 등을 통해 지속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InsideUS, 2021.3.29.). 또한 2021년 3월 말 미 의회에 제출된 USTR의 무역장벽보고서에서 각국별로 추진하거나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세를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분류한 점은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고 미국 디지털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미국의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 판단된다. 미국은 OECD BEPS를 통해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국제 합의 도출에는 찬성하지만 그전까지는 개별 국가가 도입하는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 마치며

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우리 기업도 새로운 국제 조세체계의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다만 소비자대상사업 적용범위의 추가기준, 글로벌 최저한세율 등 여러 부분이 아직 합의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OECD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성과를 맺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리나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논리를 추가로 보강하고 우리와 이해관계가 유사한 국가와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이 국내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부정적인 영향의 최소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국제 합의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국내 조세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국내에서 제기되는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요구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미국이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한 국가를 겨냥하여 통상법 제301조 조치를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관련 논의 과정에서 미국과 불거질 통상마찰(보복관세 부과 포함) 가능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 Reference

1. 김빛마로 외 (2016) “디지털경제의 주요 특징과 조세쟁점 연구” 한국조세재정정책연구원, 세법연구 16-01
2. Bauer, M (2018) “Digital Companies and Their Fair Share of Taxes: Myths and Misconceptions”, ECIPE Occasional Paper 03/2018
3. European Commission (2017) “A Fair and Efficient Tax System in the European Union for Digital Single Market”, Brussels, COM 547 final
4. Inside U.S. Trade, 2021.3.29. <https://insidetrade.com>
5. OECD (2018a),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 Interim Report 2018: Inclusive Framework on BEPS”,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Paris
6. OECD (2018b), “Revised Guidance on the Application of the Transactional Profit Split Method”, Paris
7. UNCTAD (2017) “World Investment Report 2017”. United Nations Publication.
8. ZEW (2016) “The Impact of Tax Planning on Forward-Looking Effective Tax Rates”, Centre for European Economic Research (ZEW) GMBH Taxation Papers No. 64

인터넷 법제동향

Vol. 163(April 2021)



| 발 행 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Tel. 1544-5118

| 기획·편집 | 법제연구팀

| 발간·배포 | www.kisa.or.kr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 내용의 무단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